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산업 안전측면에서-

박수만: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 산업안전측면에서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 박 수 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백10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생산의 지속불가능한 형태(unsustainable forms of product)’ 때문에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3천3백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전쟁에 의해 죽는 사람의 거의 2배이고, HIV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거의 3배입니다. 이들 사망자중 약 33만5천여명은 산업재해에 의한 것으로, 이들 중 1만2천여명은 어린아이들이며, 32만3천여명은 위험물질에 노출된 직업병 때문입니다. 작업과 관련하여 직업병에 이환되는 노동자들은 매년 1억6천만명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산업재해의 발생은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의 사회문제이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또한 국민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산업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하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논리에 치중하여 산재예방활동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이 산재발생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은 몽테스키니가 말한 “악법이 필요한 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우리가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인명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해도수율 등을 들고 나와 마치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자율재해예방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것이 산재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인적인 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구조적으로 없으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의 조직율도 10%에 불과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들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MF 이후 사업주의 관심은 생산성 향상에, 노동자의 관심은 고용안정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장의 안전마인드가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제도개선사항은 2000년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5인 미만 사업장 약 88만개소, 약 1백70만명의 노동자가 추가적용되므로 산업안전보건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명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02년부터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50인 이상 사업장에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등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재예방 뿐만 아니라 직업병 예방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산업보건은 중대하는 수요를 감당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확충을 위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의 완화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예방활동의 당사자일 수 밖에 없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전문성을 확보한 12명(법학박사 1명, 석사 6명, 학사 4명, 고졸 1명)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연구 및 개발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노조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산재보상 및 민사배상 상담 그리고 ▲작업환경측정 및 안전진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환경측정('97년10월) 및 안전진단사업('99년4월) 수행은 임금인상 중심의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인 '사업장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지난 '99년12월 의원입법한 이후 2000년 입법화를 목표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 재해예방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안전과 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공동의 토의와 연구를 강구하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환경·품질 통합경영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현재 KOSHA 2000 또는 OSHAS 18001(health evaluation 과 노동자 참여 강조) 등의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정보와 기술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감독행정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1982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감독행정 태만과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오오사까지방재판소는 1982년 9월30일 대동망간정련소에 7년 내지 21년간 정련업무에 근로하다 망간분진에 폭로되어 망간증, 진폐 등에 이환된 노동자 4명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의무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하고 또한 국가에게는 國賠法 第1條第1項 위반에 따른 각각 3천만엔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오사까지방재판소는 피고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사용자 判決認容額欄 記載의 배상금(합계 4천6백20만엔)의 지불을 명하고 또한 피고국가에 대하여 소위 「裁量權收縮의 法理」를 채용하여 「不作爲의 違法」에 의한 국배법 제1조제1항에 근거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일부 긍정하여 피고국가에게 배상금(합계 3백8만엔)의 지불을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병의 피재자와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하여 이것을 인정한 판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가의 감독행정 태만을 이유로 국가의 민사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오오사까지방재판소 판결이 처음으로 대단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직업병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의 확대이며 사업주에 대한 책임 추급만으로는 만족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해서도 그 구제의 길을 개척하였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감독행정 철저를 촉구하는 이론적 책임을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